

한국어 어학연수(D-4) / 유학(D-2) 사증 구비서류

2024.9.26. 주호치민총영사관

1.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최근 3개월내 공증본 인정)을 받아야 함(단,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베트남 온라인 발급 CT07, CT08은 제외)
2. 구비서류 중 신분증(학생증 등), 통장, 카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3. 사증 발급 여부 및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 진행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인 베트남에 2년이상 체류입증 또는 2년 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5. 서류 사본은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양면 복사 금지) 하고,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용지 잘라내기 금지)
6. 사증발급신청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부착
7. 출생지 정보가 없는 베트남 여권의 경우 여권에 출생지 확인을 받아 사증을 신청하여야 함.
8. 어학연수(D-4)의 경우 우수인증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
9.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며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10. 제출서류 미흡 시 또는 접수시 요청한 서류 미보충시 사증발급 불허
11.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6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시행일 : 2024. 9. 26.

한국어 어학연수(D-4)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
| 1 |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 |
| 2 |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
| 3 |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같음. | |
| 4 |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 5 |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 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 포함) | |
| 6 | ○ 결핵진단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 ※ 당관 홈페이지에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 참고 | |
| 7 | ○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아래의 7-1을 참고 <u>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및 통장 원본</u> ① 수도권 소재 대학 :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②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8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
| 7-1 | <p>○ 재정증빙서류</p> <p>1.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직업에 관련된 사진 필수)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부모의 자산 입증 서류</p> <p>2.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p> <p>3.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의 경우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기관의 직인확인서류로 대체가능</p> <p>4.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사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회사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p> <p>5. 장학생의 경우 -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p> | |

유학(D-2) (학위과정)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
| 1 |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 |
| 2 |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
| 3 |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같음. | |
| 4 |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 5 |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 포함) | |
| 6 | ○ 결핵진단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 ※ 당관 홈페이지에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 참고 | |
| 7 | ○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아래의 7-1을 참고 <u>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및 통장 원본</u> 1. 학위과정 ① 수도권 소재 대학 :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②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1,6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예외 : - D-2-4 ~ 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3개월) 충족 불필요 - 컨설팅 대학 유학생의 경우, <u>최소 6개월 이상 예치 필요</u> 2. 교환학생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x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해당연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의 1인 가구 월 기준금액(2024년: 1,069,654원) x 체류개월수 | |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
| 7-1 | <p>○ 재정증빙서류</p> <p>1.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직업에 관련된 사진 필수)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부모의 자산 입증 서류</p> <p>2.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p> <p>3.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의 경우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기관의 직인확인서류로 대체가능</p> <p>4.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사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회사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p> <p>5. 장학생의 경우 -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p> | |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
| 8 | <p>○ 과정별 제출서류</p> <p>1. 우수 인증 대학(불법체류율 1%미만) : 구비서류 연번 1번 ~ 4번, 6번만 제출</p> <p>2.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D-2-1 ~ D-2-4)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p> <p>3. 특정연구과정(D-2-5) : 구비서류 연번 1번 ~ 6번까지 제출 +신원보증서 또는 재직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p> <p>4. 교환학생(D-2-6)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원본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협정서(MOU) 등)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p> <p>5. 일-학습연계 유학(D-2-7) : 구비서류 연번 1번 ~ 4번, 6번만 제출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증명서"로 같음</p> <p>6. 방문학생 (D-2-8)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 증명서 제출 면제</p> | |

【유의사항】

○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서류심사강화

-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 어학능력기준(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 ~ 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 구 분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
| 전문학사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과정 이상 |
| (완화) 뿌리산업양성학과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 학사(전공심화) 이상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중급2 과정 이상 |
| (완화) 예체능 학과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과정 이상 |
| 교환학생*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참고자료>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 대학별 | | 국가별 | 체류자격 | 사증 발급 | 사증발급 인정서 | 전자 비자 |
|------------------|------------|---------------------|-------------------------|----------|-------------|----------|
| 인 증 대 학 | 우수 인증대학 | 국적 무관 | 어학연수(D-4-1) | ○ | ○ | × |
| | | | 유학(D-2) | ○ | ○ | ○ |
| | 인증대학 | 국적 무관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 | | | 석사(D-2-3), 박사(D-2-4) | ○ | × | ○ |
| 일 반 대 학 | | 일반 국가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크 | 어학연수(D-4-1) | × | ○ | × |
| | | | 유학(D-2) | ○ | × | × |
| 하 위 대 학 | 건설팅대학 | 일반 국가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크 | 유학(D-2-1~5, D-2-7) | ○ | × | × |
| | | | 유학(D-2-6, D-2-8/D-4-1) | × | ○ | × |
| | 비자제한 대학 | 국적 무관 | 유학(D-2-4~6, 뿌리산업 및 복학생) | × | ○ | × |
| | | 정부초청장학생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대상별 사증 발급 내용】

| 구 분 | 대상자 | 약 호 | 발급 내용 |
|--------------------------------------|------------------|-------|---|
| 학 위 과 정 일 반 기 준 | 전문학사과정 | D-2-1 |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 우수인증대, 인증대 유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단, 유학(D-2) 사증 발급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우수)인증대라 하더라도 체류 기간 1년 이내 부여 |
| | 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 D-2-2 | |
| | 석사과정 (학·석 통합) | D-2-3 | |
| | 박사과정 (석·박 통합) | D-2-4 | |
| | 일·학습연계 | D-2-7 | |
| | 연구과정 | D-2-5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 | 교환학생 | D-2-6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 | 방문학생 | D-2-8 | |
| 구 분 | 대상자 | 약 호 | 발급 내용 |
| 어학연수과정 | 한국어연수 | D-4-1 |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